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496
----------	-----

제출년월일: 2025. 10.
제출자: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6년도 평창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은
 - (토지 취득) 3건 9필지, 20,243㎡, 1,185,018천원
 1. 노람들 동물체험농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3필지 5,455㎡, 75,018천원
 2.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1필지 661㎡, 160,000천원
 3. 대관령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5필지 14,127㎡, 950,000천원
 - (건물 취득) 3건 3동, 1,520.4㎡, 7,250,000천원
 1. 대관령 전지훈련장 창고 신축: 1동 140㎡, 300,000천원
 2. 대관령 파크골프장 관리동 신축: 1동 140㎡, 450,000천원
 3.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신축: 1동 1,240.4㎡, 6,500,000천원
 - (기타 취득) 3건 3식, 101,380㎡, 10,040,000천원
 1.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 1식 34,705㎡, 3,700,000천원
 2. 대관령 파크골프장 조성: 1식 55,870㎡, 3,440,000천원
 3. 청옥산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 1식 10,805㎡, 2,900,000천원

3. 붙임자료

- 가. 202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총괄표) 1부
- 나. 2026년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 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부서별) 1부
- 라. 관계법령 발췌 1부. 끝.

[붙임 나]

2026년도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 득 처 분 시 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토지 취득 합계(3건, 9필지)			20,243	1,185,018			
소계 1건, 3필지			5,455	75,018			
1	임	평창읍 중리 산1	3,695	44,340	2026	노람들 동물체험농장 구성	이용*
2	임	평창읍 중리 산1-1	167	2,004	2026		장승*
3	임	평창읍 중리 산1-2	1,593	28,674	2026		이용*
소계 1건, 1필지			661	160,000			
1	전	대관령면 황계리 344-27	661	160,000	2026	대관령 전지훈련장 구성	박동*
소계 1건, 5필지			14,127	950,000			
1	임	대관령면 유천리 1-17	4,383	348,008	2026	대관령 파크골프장 구성	조덕*
2	전	대관령면 유천리 1-46	411	32,234	2026		신순*
3	전	대관령면 유천리 1-47	929	73,415	2026		조덕*
4	전	대관령면 유천리 1-48	343	26,828	2026		조덕*
5	전	대관령면 유천리 1-57	8,061	469,515	2026		김동*
건물 취득 합계(3건, 3동)			1,520.4	7,250,000			
소계 1건, 1동			140	300,000			
1	전	대관령면 황계리 344	140	300,000	2027	대관령 전지훈련장 창고 신축	평창군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예정가격	취 득 처 분 시 기	취득처분사유	비 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소계 1건, 1동			140	450,000		
1	임	대관령면 유천리 산26-20 일원	140	450,000	2027	대관령파크 골프장 관리동 신축	평창군
	소계 1건, 1동			1,240.4	6,500,000		
1	대	평창읍 하리 210-2	1,240.4	6,500,000	2027	통합 재난안전 상황실 신축	평창군
기타 취득 합계(3건, 3식)			101,380	10,040,000			
	소계 1건, 1식			34,705	3,700,000		
1	전	대관령면 황계리 344 외 1필지	34,705	3,700,000	2027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	평창군
	소계 1건, 1식			55,870	3,440,000		
1	전	대관령면 유천리 산26-20 일원	55,870	3,440,000	2027	대관령 파크골프장 조성	평창군
	소계 1건, 1식			10,805	2,900,000		
1	답	미탄면 창리 796-3 외 24필지	10,805	2,900,000	2026	청옥산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	평창군

[붙임 다]

군유재산 취득 및 처분 사업계획서

사 업 명	부서	쪽
1. 노람들 동물체험농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관광정책과	8
2.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사업	올림픽체육과	11
3. 대관령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올림픽체육과	14
4.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조성사업	안전교통과	18
5. 청옥산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사업	산림과	22

- 노산 및 노람들 일원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동물 체험형 시설 조성을 위해 대상 부지(3필지)를 확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치: 평창읍 중리 산1번지 외 2필지
- 사업내용: 토지 취득 3필지 5,455㎡
- 사업비: 75백만원
- 사업기간: 2026. 1. ~ 2027. 5.

□ 사업추진의 필요성

- 노람들 일대는 바위공원, 힐링체험파크, 에코랜드, 물환경체험센터 등 남부권 관광 거점지로 집단화되어 있으나, 힐링과 휴식공간 위주로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 유인을 위한 매력적인 시설이 부족한 상황.
-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색다른 체험시설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돌문화체험관 뒤편에 체험형 동물농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자 하고,
- 아울러, 노람들의 다른 시설과 단절되어 있는 힐링체험파크와의 연결을 통해 각 시설에 대한 유기적인 연계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 취득대상 재산내역

○ 토지(매입)

(단위: m²,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재산가액		취득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계(3필지)			5,455	5,455	11,144,050	75,018,000		
평창읍 중리	산1	임	3,695	3,695	7,500,850	44,340,000	2026년 상반기	이용정
평창읍 중리	산1-1	임	167	167	345,690	2,004,000	2026년 상반기	장승현
평창읍 중리	산1-2	임	1,593	1,593	3,297,510	28,674,000	2026년 상반기	이용정

※ 예정가격은 가감정으로 산정된 금액이며,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평창읍변영회 건의서 제출: 2025. 7.
- 평창읍변영회 알파카농장 건축: 2025. 9.
- 평창읍 예산 건의: 2026년 당초예산 130백만원(설계비·부지매입비)
-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확보: 2026년 당초예산 계상
-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 2026. 1. ~ 3.
- 실시설계: 2026. 3. ~ 7.
- 시설비 예산 확보: 2026년 1회 추경 계상
- 시설사업 추진: 2026. 8. ~ 2027. 5.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지적도



현황사진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사업

- 전지훈련 유치 경쟁 심화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관령 전지훈련장 확충을 통해 전지훈련 유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치: 대관령면 횡계리 344 외 1필지
- 사업면적: 34,705㎡ (강원도개발공사 34,044㎡, 사유지 661㎡)
- 사업내용: 전지훈련장 조성 1식
 - 육상 8트랙, 주차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사무실 및 탈의실, 이동식 관람석, 웬스 등
 - 육상 종목별 연습장(멀리·세단뛰기, 창던지기, 높이뛰기, 투포환, 투원반, 투해머, 장대높이뛰기 등)
- 사업비: 4,160백만원(도비 2,600, 군비 1,560)
 - 부지매입비 160백만원(군비), 사업비 4,000백만원(도비, 군비)
 - ※ 대관령 군유지 집단화사업 부지 활용(회계과)
 - ※ 사업비(도비) 확보 방안: 2026년 "도 전환사업" 신청(도비 65%, 군비 35%)
- 사업기간: 2026. 1. ~ 2027. 6.

□ 사업추진의 필요성

-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은 민선8기 공약이며, 대관령면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추진 필요성이 큼.
- 2018 ~ 2024년 전지훈련 방문객은 유치팀 수가 42팀에서 202팀으로, 연간 체류 인원은 1만 명에서 5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나,
 - 기존 고원전지훈련장은 비정규 트랙과 축구장 병행 구조로 운영되어 전지훈련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 2024년 대한육상연맹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전국 단위 실업팀 및 학생선수단 유치 기반이 마련된 만큼 종목별 전용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전지훈련장은 정규 8레인 트랙과 종목별

전용 연습장을 갖춘 전문 인프라로서 선수단 체류 일수 증가와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취득대상 재산내역

○ 토지(매입)

(단위: m²,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재산가액		취득 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대관령면 횡계리	344-27	전	661	661	-	160,000,000	2026년	이OO

○ 건물(신축)

(단위: m²,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연면적	용도 (구조)	재산가액		취득 시기
						기준가격	예정가격	
대관령면 횡계리	344	전	95,956	140	운동기구 보관창고	-	300,000,000	2027년 (하반기)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대관령 전지훈련장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완료: 2023. 12.
- “평창군-대한육상연맹” 업무협약 체결: 2024. 10.
- 2026년 체육진흥시설지원(도 전환) 사업비 신청: 2025. 6.
- 지방재정투자심사(도심사) 신청: 2025. 7.
- 공유재산심의 반영: 2025.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2025. 11.
- 2026년 당초예산 반영(*사유지 부지매입비): 2025. 12.
- 부지확보를 위한 협의 및 토지보상: 2026. 1. ~ 2.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 3. ~ 7.
- 공사착공 및 준공: 2026. 8. ~ 2027. 6.

□ 위치도



□ 사업계획(안)



-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대관령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층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치: 대관령면 유천리 산26-20번지 외 6필지
- 사업면적: 55,870㎡ (군유지 41,743㎡, 사유지 14,127㎡)
- 사업내용: 파크골프장 조성(18홀), 부대시설(주차장, 관리동 1동 등), 기타주변정비
- 사업비: 4,840백만원(도비 2,275, 군비 2,565)
 - (부지매입비) 950백만원(군비)
 - (사업비) 3,500백만원(도비, 군비)
 - (기타_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390백만원(군비)
- ※ 사업비(도비) 확보 방안: 2026년 1회추경 "도 전환사업-체육진흥시설 지원 신청" (도비65%, 군비 35%)
- 사업기간: 2026. 1. ~ 2027. 9.

□ 사업추진의 필요성

- 군수 읍면 순방 시 주민 지속 건의('23년 하반기, '25년 상반기)
- 우리군 65세 이상 인구 14,547명(전체인구의 36.4%, 2025. 6.기준) 중 고령인구 1,700명 이상 읍면은 대부분 파크골프장이 기 설치 또는 설치 예정이나 대관령면은 미설치.
- 2024년 기준 대관령면 방문 관광객은 715만 명 이상(출처: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으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 활용 가능한 체류형 스포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회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취득대상 재산내역

○ 토지(매입)

(단위: m²,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재산가액		취득 시기	소유자
					기준가격	예정가격		
합 계 (5필지)			14,127	14,127	516,514,200	950,000,000		
대관령면 유천리	1-17	임야	4,383	4,383	176,634,900	348,008,000	2026년	조00
	1-46	전	411	411	16,070,100	32,234,000		신00
	1-47	전	929	929	36,323,900	73,415,000		조00
	1-48	전	343	343	13,411,300	26,828,000		조00
	1-57	전	8,061	8,061	274,074,000	469,515,000		김00

○ 건물(신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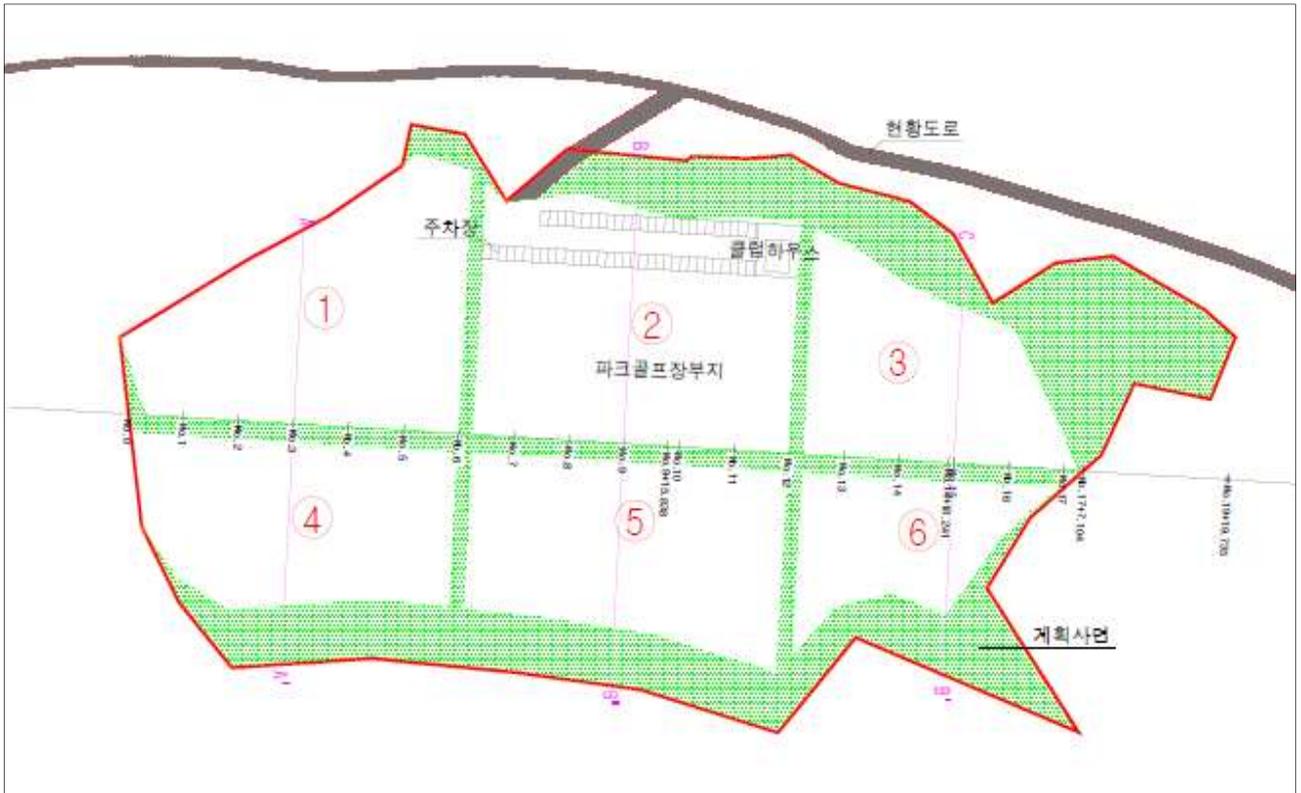
(단위: m²,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연면적	용도 (구조)	재산가액		취득 시기
						기준가격	예정가격	
대관령면 유천리	산26-20 일원	임야 전	38,103	140	파크골프 장관리동	-	450,000,000	2027년 (하반기)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진출입로 확장 관련 도로점용 사전협의(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2025. 7.
- 추진계획 수립: 2025. 8.
- 지방재정투자심사(자체) 이행: 2025. 10.
- 2026~203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공유재산심의 반영: 2025. 10.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2025. 11.
- 2026년 당초예산 반영(*사유지 부지매입비): 2025. 12.
-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 및 토지보상: 2026. 1. ~ 3.
- 2026년 1회추경 체육진흥시설지원(도 전환) 사업비 신청: 2026. 3.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26. 6. ~ 9.
- 공사착공 및 준공: 2026. 10. ~ 2027. 9.

□ 사업계획(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4시간 상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인력 근무공간 확보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통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평창읍 하리 210-2번지(평창군청 뒤편)
- 사 업 량: 1,240.4㎡(지하1층, 지상2층)
 - (지하1층) 기계실, 통신실 등
 - (지상1층) 사무공간(2개 부서)
 - (지상2층) 통합재난안전상황실(CCTV관제센터, 재난안전상황실 등), 연결통로
- 사 업 비: 6,500백만원
- 사업기간: 2026. 1. ~ 2027. 12.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전담인력을 활용한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상시 운영체계 구축
 - 현 지하1층 재난안전상황실은 전담인력 근무공간이 협소하여 전담인력 근무공간 확보 등을 위한 증축 필요
 - 현 CCTV관제센터를 포함한 통합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을 통해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하고자 함.
- 조직개편, 직원 증원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문제 해소

□ 취득대상 재산내역

- 건물(신축)

(단위: m²,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연면적	용도(구조)	재산가액		취득 시기
					기준가격	예정가격	
평창읍 하리	210-2	대	1,240.4	사무시설 (철근콘크리트)	-	6,500,000,000	2027년

□ 추진현황

- 부지선정 및 계획 수립: 2025. 4.
- 건축기획 설계 용역 착수: 2025. 6.
- 도 투자심사 결과 통보: 2025. 9.

□ 향후계획

- 사전 행정절차 이행: 2025.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6. 1.
- 건축 인·허가: 2026. 8.
- 공사 착공 및 감리: 2026. 9.
- 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및 CCTV 등 장비 이송: 2027. 11.
- 준공 및 개관: 2027. 12.

□ 현황사진



청옥산 셔틀버스 승하차장(주차장) 조성

-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과 연계한 셔틀버스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승하차장(주차장) 조성

□ 사업개요

- 위치: 미탄면 창리 796-3번지 외 24필지
- 사업내용: 승하차장 조성 10,805㎡(국유지 18필지, 군유지 7필지),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등
- 사업비: 2,900백만원
- 사업기간: 2026. 1. ~ 12.

□ 추진사항

- 청옥산 셔틀버스 타당성 용역 추진: 2023. 4. ~ 2024. 9.
- 승하차장 조성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예산 반영: 2025. 4. ~ 5.
- 국유지(캠코) 매입 협의 추진: 2025. 5. ~
※ 국유지(1필지 475㎡, 52백만원) 매입 협의 중
- 승하차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2025. 6. ~ 2025. 8.
※ 사유지(4명, 7필지 6,938㎡, 923백만원) 매입 완료
- 현황측량 실시: 2025. 9.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미탄면 시내권에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이 필요
-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 취득대상 재산내역

○ 주차장 조성

(단위: m²,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조성면적	용도	금액(공사비)	취득시기
미탄면 창리	796-3 외 24	답 외	11,000	10,805	셔틀버스 승하차장 (주차장)	2,700,000,000	2026년 하반기

○ 건물(가설건축물)

(단위: m²,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연면적	용도(구조)	금액	취득시기
합계				85		200,000,000	
미탄면 창리	1074-1	답	1,124	40	관리사무소 (이동식컨테이너)	100,000,000	2026년 하반기
				45	이동식화장실 (시멘트블록조)	100,000,000	2026년 하반기

□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2025. 11.
- 2026년 당초예산 반영: 2025. 12.
-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 관련 실시설계 용역 추진: 2026. 1. ~ 2.
- 셔틀버스 승하차장 조성 관련 입찰 및 공사추진: 2026. 3. ~ 12.

□ 현황사진



□ 사업대상지 현황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비고
합계			11,000	10,805		
미탄면 창리	287-1	천	29	29	농림부	대부
	791-4	도	646	646	국토부	대부
	795-3	도	26	26	국토부	대부
	796-3	답	230	230	평창군	매입완료
	796-5	도	39	39	국토부	대부
	805-4	대	106	106	국토부	대부
	1074-1	답	1,124	1,124	평창군	매입완료
	1075	답	585	475	기재부	매입진행
	1075-1	답	84	21	국토부	대부
	1075-2	답	41	19	기재부	대부
	1077	구	784	784	농림부	대부
	1078	답	999	999	평창군	매입완료
	1078-1	답	1,186	1,186	평창군	매입완료
	1078-2	답	110	110	국토부	대부
	1078-3	답	176	176	국토부	대부
	1078-4	답	91	91	국토부	대부
	1078-5	답	112	112	국토부	대부
	1079	답	1,228	1,228	평창군	매입완료
	1079-1	답	270	270	국토부	대부
	1079-2	답	121	121	국토부	대부
	1080-1	답	273	273	국토부	대부
	1081	답	1,988	1,988	평창군	매입완료
	1081-1	답	132	132	국토부	대부
	1082	답	183	183	평창군	매입완료
1082-2	답	437	437	국토부	대부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 제1항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3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1건당 기준가격 재산 및 제2호의 1건당 기준면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신설 2022.12.30.>